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우리 노조 의견

1. (각 건물) 연면적이 2천m² 미만이면서 교육연구시설인 학교, 연면적 400m² 미만이면서 노유자 시설인 (병설)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(자진 설비로) 의무 설비가 아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, 일부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관행적으로 선임하여 각종 사고 시 그 책임이 행정실장 등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함. (※ 경남, 전북의 경우 해당 학교 미선임)
2. 아울러, 학교 건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해당 건물에 상시근무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본교에 상주하는 자를 분교장에는 선임할 수 없음. (분교장도 상시근무자 중 '감독직에 있는 자'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분교장 지방공무원을 선임할 수 없음.)

※ 관할 소방서 질의 예시(관할 소방서에 공문 또는 국민신문고로 질의)

1. 우리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(노유자 시설)로서 각 건물 연면적 현황은 불임과 같습니다.
2. 우리 학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각 건물 연면적 현황 1부. 끝.

※ 참고: 관련 근거

1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의 관리 등)
2.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(기관장의 책임), 제5조(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), 제6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)
3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(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)
4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(교육연구시설, 노유자 시설), 별표4(경보설비(자동화재탐지설비))
5.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(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)